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보험업법 제111조제3항과 제4항에 관련된 사항

1. 대주주명		동부캐피탈(주)
2. 신용공여내용	신용공여일	- (최초공여일 2005년 8월 22일)
	신용공여종류	신용대출
	신용공여금액(원)	- (최초공여액 5,000,000,000)
	신용공여총잔액(원)	4,000,000,000
	만기일	2015년 2월 22일
	신용공여금리(%)	연 7.00%
3. 자금용도		대출연장(본건은 기존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의 변경공시임)
4. 이사회결의일		2014년 8월 14일
5. 기타		- 본 건은 동부캐피탈(주)에 대출 중인 40억원의 대출 만기상환일(2014년 8월 22일)이 도래함에 따라 신용공여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임. [변경사항] 1)대출기간 - 변경전 : 2013. 8. 22 ~ 2014. 8. 22 - 변경후 : 2014. 8. 22 ~ 2015. 2. 22 → 대출기간 6개월 갱신 2)금리 - 변경전 : 6.57% - 변경후 : 7.00%